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발 의 자 : 박미영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안 제4조 ~ 제5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안 제6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입주자 교육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규정하였음.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주민갈등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7년 9월 한국환경공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진단 접수건수 중 아파트 거주자가 77.6%를 차지하고, 층간소음에 의한 피해대상 중 아래층 거주자가 79.6%이며, 특히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 소리”가 71.1%를 차지하여 자녀를 대상으로 실내생활 교육 및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¹⁾ 상담 신청현황]

|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
| 전화인터넷 상담 | 12,491 | 15,242 | 14,067 | 11,891 |
| 현장진단 | 3,271 | 4,465 | 4,712 | 3,782 |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여 갈등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환경부 산하 소음민원 콜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326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일

발의자 : 박미영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 명시(안 제3조)
- 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 ~ 제5조)
-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안 제6조)
- 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안 제7조)
- 마. 층간소음 방지 시책 홍보(안 제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11. 8. ~ 11. 13.)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